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59

발의연월일: 2021. 5. 12.

발 의 자:김승수·김용판·배현진

서일준 · 이달곤 · 이 용

이종배 · 이주환 · 정진석

최형두 · 추경호 · 한무경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국에서 제작되어 국내 출시된 게임 중 우리나라 한복이 '중 국 의상아이템'으로 등장하거나, 청나라 의복으로 둔갑된 사례가 발 생함.

또한 중국은 국내 게임사의 판호 발급과 관련하여 주요 심사기준으로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알려야 한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부합여부' 등을 추가하면서, 실제 국내에서 제작하는 많은 게임들이 중국 버전에서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콘텐츠를 변경하고 있음.

이렇게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며 동북공정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반국가적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경우 제작 또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역사적 사실의 왜곡 등을 판별할 수 있는 관련 절차나 심사기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동법 제16조제4항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하여 법률요건의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게임 제작 및 유통에 있어 역사적 사실 왜곡의 심각성을 환기시켜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

법률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정보통신"을 "정보통신·역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① ~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	4
·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	
육·언론· <u>정보통신</u> 분야에 종	<u>정보통신·역사</u>
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	
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	
임산업・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	
람 중에서 성별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	
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